

제2019-3회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록

1. 회의개요

- 일 시 : 2019. 9. 25.(수) 11:30~13:00
- 장 소 : 외빈식당 2호실
- 참석자 :
 - KIST : 김동한(경영관리실장), 김성현(총무복지팀 담당자)
※ 염기홍 총무복지팀장 불참(병가)
 - 청렴시민감사관 : 김진욱(변호사), 김효철(회계사), 박진호(노무사)

2. 안건

- 근로시간 단축제도(유연근무제) 시행 경과보고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정(안) 보고

3. 회의내용

- 간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 후 다음과 같이 논의함.
- 안건명 : 근로시간 단축제도(유연근무제) 시행 경과보고

○ 보고내용

- 근로시간 단축제도('19.7.1 시행)에 따른 추진경과, 연장근로 및 보상 휴가 발생현황을 보고함.
-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시간제도 운영지침 제정('19.7.1.부.),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승인('19.7.1.~9.30.), 연장근로 사후승인 등 PC-OFF시스템의 기능 추가개발('19.9.1.)을 추진하였음.
- 연구부서의 경우 포닥/인턴/학연 위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고, 행정 부서는 국정감사, 기관평가 등 특정이슈로 기획예산팀, 학연운영팀, 인사경영팀, 정책기획팀 등에서 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음.

- 보상휴가 발생자에 한하여 통합 로그인시 메인화면에 발생 보상휴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.(20일 이후 소멸예정 보상휴가 안내)

○ 논의결과

- 전문원, 기술원에 대한 재량근무제 도입방안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의견수렴 후 사용자-근로자측 실무협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함.

□ 안건명 :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정(안) 보고

○ 보고내용

- 근로기준법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 금지) 시행('19.7.16.)에 관련하여 우리 원 취업규칙 개정에 따른 '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' 제정(안)을 보고함.
-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, 조치사항 및 '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' 제정을 위한 위임 규정을 취업 규칙에 명문화함.
-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명시하고, 예방·대응조직, 상담원 구성 및 운영, 예방교육 실시, 신고의 접수, 조사, 처리 및 관리, 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,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포함하여 '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'을 제정하고자 함.

○ 논의결과

- 근로기준법 개정(안) 시행('19.7.16.)에 따라 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며, 근로기준법 개정(안) 시행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음.
- 최근 사회 전반의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갑질근절 대책과 연계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.

위 사실을 확인함.

2019. 9. 30.

경영관리실장

김 동 ~~한~~ (안)

총무복지팀

김 성 현

청렴시민감사관

박 진 호

